

차 · 별 · 없 · 는 · 사 · 회 · 를 · 열 · 어 · 갑 · 니 · 다



#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  
차별없는 사회,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



#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안정된 미래를 위한 보장, 보험!**

보험에서의 장애인 차별은  
현재의 편견이 장애인의 미래마저 차별하는 것과 같습니다.



#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 목차

1. 가이드라인의 의의	04
2.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및 범위	07
3. 장애 및 차별의 정의	09
4. 차별의 입증책임과 정당한 사유	12
5. 인수단계의 차별	16
6. 보험계약 유지와 차별	23
7. 보험금 지급과 차별	24
8. 보험차별을 당한 경우의 구제절차	25

# 1

## 가이드라인의 의의

### 1. 제정 경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에 따르면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제17조).

「장애인복지법」에도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조).

「보험업법」에서도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97조 제1항 제10호).

실무상 보험과 관련하여 장애인을 달리 취급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워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어떠한 경우가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에 해당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위법한 보험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 목적

보험과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지 그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회사에게는 “보험을 인수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절차에서, 어떤 경우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되는지”를 안내하여 실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에게는 어떤 경우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어떤 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 3. 법적 의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 동법에서 규정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차별여부를 판단하며(「장애인차별금지법」 제41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또한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조치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6호). 이러한 권한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작성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차별’ 등의 개념을 가급적 이해하기 쉽게 구체화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보형차별과 관련하여 차별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적용되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하여 차별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이드라인 자체가 법률은 아니므로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새로운 권리가 창설되거나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 2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 및 범위

## 1. 적용되는 장애 또는 장애인의 범위

이 가이드라인에서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장애인’이란 전향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의 장애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복합적 장애를 가진 사람도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과거에 장애가 있었던 사람 또는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장애...  
어디까지가 장애일까?  
렌즈 없이는 되는게 없는 나,  
나도 장애인인가?

보청기가 보조기면  
안경도 보조기.....?  
그럼, 나도 장애인?



## 2. 적용대상인 보험 및 보험회사의 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사보험을 대상으로 합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재보험 등을 모두 포함하고, 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공제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싸~악

땡땡

이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만들어지거나 판매를 개시한 보험상품 뿐만 아니라 그 전의 보험상품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다

이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보험업법」을 비롯하여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우체국, 농업협동조합, 각종 공제조합 및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보험회사도 그 적용대상이 됩니다.

전부다

모조리

예외없이

차별없이



# 3

## 장애 및 차별의 정의

### 1. 장애의 유형과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한 장애의 종류와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따릅니다.

장애의 종류는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고, “신체적 장애”는 외부기관의 장애와 내부기관의 장애로 나눕니다. 외부기관의 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로, 내부기관의 장애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로, “정신적 장애”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로 분류합니다.

### 2. 차별

1. 이 가이드라인에서 차별이란 다음의 하나를 말합니다.

- ①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②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2. 전항 ①, ②의 차별은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예시할 수 있습니다.

- 보험상담 또는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
- 보험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하는 것
- 보험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것
- 가입절차에서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것
-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는 것
-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낮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3. 전항 ③의 차별은 다음과 같은 것을 예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에게 필요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 보험 내용의 설명에 있어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

### 3. 차별의 예외

1. 보험 차별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과도한 부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2.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합리적 근거로는 ① 법률의 규정 ② 의학적·과학적 근거 ③ 검증된 통계자료 ④ 동 가이드라인의 내용 ⑤ 기타 전문가의 의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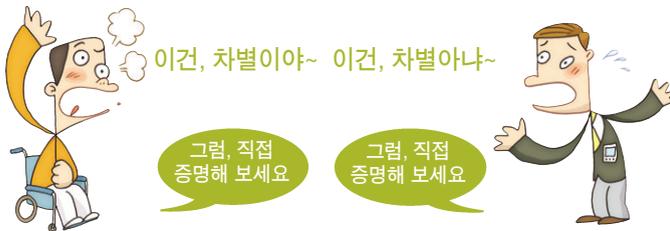
# 4

## 차별의 입증책임과 정당한 사유

### 1. 입증책임 개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분쟁에 있어서 보험과 관련하여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장애인, 장애인 관련자)이 입증하여야 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1항).

전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입증하여야 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법」 제47조 제2항).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3가단150990 판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로서 의학적·과학적 자료, 검증된 통계자료, 재보험사의 인수기준, 전문가의 의견 등 합리적 위험판단에 근거한 자료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정보를 합리적으로 획득할 수 있음에도 불완전한 정보에 근거하여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개연성을 높입니다.

## 2. 의학적 · 과학적 근거

의학적 ·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계자료는 하나의 장애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애의 복합 효과를 평가하는데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 소견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는 의사나 보험의사가 해당 장애인에 대한 의학적 진단과 평가를 기초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탄핵할 다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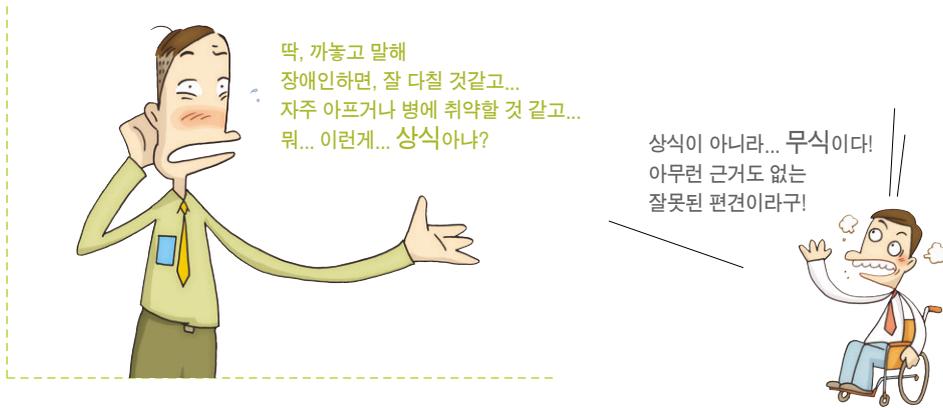
## 3. 검증된 통계자료

보험회사는 어느 장애가 또는 어느 장애인이 해당 보험상품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위험률이 높다는 검증된 통계자료를 제시하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계자료는 국내 자료가 바람직하나, 국내 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국외 자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 자료를 우리나라 또는 우리 국민에게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통계자료는 정부의 연구, 의학문헌에 보고된 연구, 개별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 등이 연구한 자료를 포함합니다. 개별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 등이 연구한 자료는 통계적 가치와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통계자료는 작성 목적, 배경, 작성자 등에 따라서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탄핵할만한 다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신뢰하여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4. 인수기준, 상업적 판단

보험회사는 장애인에 관한 보험인수의 기준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수기준은 보험통계, 의학적 통계 및 소견 등 합리적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의학적 지식의 진보, 사회복지 및 치료방법의 진보 등에 따라 갱신되어야 합니다.

합리적 근거 및 과학적 자료를 토대로 마련된 신뢰성 있는 재보험사 및 다른 회사의 인수기준도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도입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그 인수기준을 채택한 이유와 해당 인수기준의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인수기준이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되며, 더 나아가 불합리한 인수기준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전사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행하여진다면 위법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보험과 관련한 행위는 의학적 또는 통계학적 확률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상업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 판단이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차이를 두는 것을 넘어설 때는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 5. 기타 전문가의 의견

검증된 통계자료, 의학적·과학적 근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비롯한 합리적인 근거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객관적이어야 하고, 합리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임상전문가, 물리치료사, 심리학자 등의 의견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리인의 조언이나 의견도 의학적 연구를 해석하거나 차별 여부를 판단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5

## 인수단계의 차별

### 1. 절차상의 차별

장애를 이유로 상담 또는 심사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청약 접수를 거절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보험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절차 내지 의사소통 과정에서 인적·물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에게 보험 인수 절차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개인이 확보하기 어려운 무리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증명 등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지극히 사적이며 수치스러운 정보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병력기록 전부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는 건강진단을 요구하는 것도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비추어볼 때 개인의 구체적 상태를 건강진단을 통해 확인하여야 보험 인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면 건강진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건강진단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사안에 따라서는 장애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장애에 따른 위험성에 대하여 자세한 정보를 구하거나 평가를 하기 위해서 결정이 지연되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를 이유로 특별한 이유 없이 처리속도를 지연시키거나 인수 여부 결정을 미루는 것은 차별입니다.



장애를 이유로 인수를 거절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인수를 거절할 수밖에 없지만, 장애인 전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할 때 그 장애가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개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항이라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그 사항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특히 보험회사가 만든 질문 표에 장애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면 고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 인수거절과 차별

장애인등록상의 등급이 높다는 이유로 무조건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장애인등록제도는 그 목적과 내용이 다른 것이어서, 등급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여러 장애가 있는 경우 등급이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장애등급 이외에도 개인의 장애 정도, 원인, 건강상태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사용하는 '장애등급분류표' 를 인수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 2005년 민간보험에서의장애인차별 개선권고).

막연한 편견, 부정확한 추측만으로 장애가 있다는 사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청각장애를 이유로 암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 워~ 낙~  
미래를 예상할 수 없어서...  
보험가입이 힘들겠습니다



위험률을 단순히 의심하는 수준에서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차별입니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만을 이유로 여행자보험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암발생률이 높다는 근거 또는 의학적 합의가 없는 상태이므로, 특정 장애가 암발생률을 높인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암발생에 대한 담보를 배제하거나 이를 이유로 암보험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합니다. 보험의 등의 진단을 거쳐 구체적 위험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보험인수 거절 역시 차별에 해당합니다.

위험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뇌병변장애인으로 장애등급이 1등급인 장애인이 종신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위험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합리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2. 2003가단150990 판결).

장애인의 개별적·구체적 상황과 장애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인의 장애등급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인수를 거절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개인의 구체적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위험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아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험가입이 된 장애인과 동일한 장애를 가졌더라도 개인적 특성과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장애에 따라 진행정도가 다르고 장애의 경중, 복합 정도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항상 같은 위험도를 보일 것이라고 추측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이 있는 장애인은 신체운동·인지·언어 기능, 동반된 만성 질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여명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여명이 짧다고 단정하고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보험회사가 인수하거나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장애와 보험의 종류에 관하여 특정 보험회사가 가입을 거부할 경우, 해당 보험회사가 갖고 있는 특수한 지식이나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3. 보험조건과 차별

장애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보험조건을 가중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해당 장애가 보험사고의 위험율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보장내용을 감축하거나 부담보를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해당 장애와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보험인수를 거절하기에 앞서서 할증보험료, 담보의 제한, 보험금의 감축 등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성을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보험인수를 거절하기에 앞서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4. 「상법」 제732조의 적용문제

정신장애인 또는 지적장애인을 곧바로 「상법」 제732조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로 단정하고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이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심신박약이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말합니다. 특히 심신박약자란 계속적으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을 것이 요구되므로, 때때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다고 해도 대체로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심신박약자가 아닙니다(대전지방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나784 판결).

개별적으로 보험의 의미와 보험사고에 관하여 판단할 의사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볼지 않고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적장애의 등급, IQ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심신박약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신장애 때문에 치료와 투약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심신박약자로 취급하여 보험가입을 거절한다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32조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사망을 담보로 하지 않는 상해보험, 생존보험, 손해보험 등에 적용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사망을 담보로 하지 않는 손해보험, 생존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존보험(교육보험, 연금보험)에 사망담보 조건을 추가하여 「상법」 제732조에 따라 일률적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된다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시설, 장애인학교 등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의 가입을 검토할 때 일부 피보험자가 「상법」 제732조에 의한 심신상실, 심신박약을 가진 것으로 평가 된다고 하여 이를 분리하지 않고, 전체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5. 「상법」 제644조의 적용문제

장애의 종류와 해당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을 살펴보지 않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법」 제644조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애의 발생이 주계약의 달성조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장내용을 부담보로 하거나 삭제하는 조건으로 보험인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령 해당인이 청각장애 2급이라서 장해지급율이 80%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4조에 따라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고 보아 보험가입을 거절한 사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 부담보 등의 조건을 검토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 10진정0231300).

어느 장애의 존재로 인하여 전항에서 제안된 것처럼 해당 장애와 관련된 내용을 부담보로 할 경우 보험상품의 본질적 보장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면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6

## 보험계약 유지와 차별

### 1. 부당한 해지 또는 무효화

보험회사는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이후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기기증자 등이 된 경우, 이로 인하여 위험이 증가한 것이 의학적·통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을 해지하거나 무효화해서는 안 됩니다(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10조).

장애의 존재 또는 경중이 고지의무의 대상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하였다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장애가 생겨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한 때에는 보험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상법」 제652조).

### 2. 보험조건의 부당한 변경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장애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보험조건을 가중하거나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7

## 보험금 지급과 차별

### 1. 보험금 지급에서의 차별

과거 또는 현재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부당하게 적은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특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에서는 기왕에 가지고 있던 장애 또는 질병이 보험사고 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안에서 보험금 지급범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액보험인 상해보험의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아닌 한,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장애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상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확대되었을 때 보험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약관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장애 또는 질병 등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 판결).

### 2. 보험금 지급절차에서의 차별

과거 또는 현재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심사를 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하거나 보험금 지급결정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 지급심사를 할 때 불필요한 자료 또는 무리한 증명을 요구해서는 아니됩니다.

# 8

## 보험차별을 당한 경우의 구제절차

### 1.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절차

장애를 이유로 보험차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이 제기된 경우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진정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당사자 사이에 조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진정인(해당보험회사)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손해배상, 구제조치의 이행, 관행의 시정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등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 2. 법무부장관의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험차별에 관한 시정권고를 하였으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전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구제절차

장애를 이유로 보험차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차별행위를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209조 제3항)

## 4.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구제절차

보험차별을 당한 장애인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보험차별을 당한 장애인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정보제공 및 당사자 사이의 합의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 5. 법원의 구제절차

보험차별을 당한 장애인은 법원에 차별행위의 중지 등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 그 이행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보험차별로 인하여 손해를 가한 자는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손해 배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행일 : 2012년

발행인 : 현병철

기 획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제 작 : 젊은기획 02) 2264-2015



국가인권위원회

---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을지로 1가 16) 전화\_ 02-2125-9700 / 팩스\_ 02) 2125-9812

이메일\_ [webmaster@humanrights.go.kr](mailto:webmaster@humanrights.go.kr)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장애인 차별 없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www.humanrights.go.kr](http://www.humanrights.go.kr)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429-01